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91
----------	-------

제안일자 : 2015. 06. 29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 비율 조정은 개발이익 환수 및 서민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현행대로 유지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에 대해서 현행대로 함(안 제20조)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0조를 현행대로 한다.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 data-bbox="413 232 529 271">〈신설〉</p> <p data-bbox="137 734 529 1021">②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인수된 소형주택의 용도는 임대주택 또는 정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.</p>	<p data-bbox="553 232 947 707">② 법 제30조의3제2항 제2호에 따른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.</p> <p data-bbox="553 734 947 1021"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0조(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) 영 제13조의 2 제2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조제3항의 가구단위로 중저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